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5. 4. 9.>

분양수량의 기준(제8조 관련)

분양대상	1회당 기준	연간 기준
1.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가. 조직	최대 10점(각 점당 최대 20mg 이하)	최대 200점
나. 핵산	최대 10점(각 점당 최대 20 μ l 이하)	최대 200점
2. 배양체		
가. 해양미생물	최대 20점(각 점당 50ml 이하)	최대 50점
나. 해양미세조류	최대 20점(각 점당 100ml 이하)	최대 50점
다. 해조류	최대 20점(각 점당 100ml 이하)	최대 50점
라. 해양동물플랑크톤	최대 20점(각 점당 20개체 이하)	최대 50점
3. 추출물	최대 20점(각 점당 20ml 이하)	최대 100점
4. 생체조직	최대 10점	최대 50점
5. 표본	최대 5점	최대 10점

비고

1. 위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배양체 1점(點)은 같은 균주(菌株)로, 같은 호 라 목에 따른 배양체 1점은 같은 종(種)으로 구성한다.
2. 위 표 제2호에서 ml는 배양액·보존액 등을 포함한 부피를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제5호에서 “표본”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액침(液浸), 건조 및 냉동 등 일정한 처리를 가하여 슬라이드, 박제 및 골격 구조물 등의 형태로 보존한 것을 말한다.
4. 표본을 분양하는 경우 1점은 해양수산생명자원 1개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표본이 1개체의 일부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군체(群體)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군체를 1점으로 한다.